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에 특별시·통합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, 「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국립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학교를 추가함(안 제2조).
-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·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).

II. 검토의견

1. 통합특별시장 추가(안 제5조의2제1항, 제6조의2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제4항·제5항 및 제33조제2항)
 - 안 제2조제4호자목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에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, 「초·

「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국립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 학교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런데 현행법 제5조의2는 시·도지사가 급경사지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시·도지사의 범위에 ‘통합특별시장’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안 제2조제4호자목의 관리기관인 ‘통합특별시’ 교육청과 체계상 부합하지 않음.
- 이에 제5조의2제1항의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통보 주체에 ‘통합특별시장’을 포함하는 등 현행법에서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조문(제5조의2제1항, 제6조의2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제4항·제5항 및 제33조제2항)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안 제5조의2제1항, 제6조의2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제4항·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수정의견
제5조의2(급경사지 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관	제5조의2(급경사지 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특별시장·통합특별 시장·광역시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6조의2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)

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· 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)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(이하 “중기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·광역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)

① 특별시장 ·

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) ① -----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

② ~ ④ (생략)

제13조(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실시계획) ① ~ ③ (생략)

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33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

① (생략)

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실시계획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**특별시장·통합**
특별시장·광역시장-----

-----.

⑤ **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**
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**특별**
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2.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인용조문 정비(안 제35조제2호)

- 현행법 제26조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능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고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 제35조제2호는 성능검사 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수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런데 안 제26조제6항은 같은 조 제2항·제3항이 신설되면서 제4항이 이동한 것으로, 제26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 제2호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음.

<안 제26조>

현행	개정안
제26조(계측기기의 성능검사) ① (생략) <신설> ②·③ (생략)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성능검사대행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<u>제2항</u> 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	제26조(계측기기의 성능검사) ① (생략) ②·③ (생략) ④·⑤ (생략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 -----.

<안 제35조제2호에 대한 수정의견>

현 행	수 정 의 견
제35조(벌칙) (생 략) 1. (생 략) 2.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. · 4. (생 략)	제35조(벌칙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제26조제6항----- ---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
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
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